

지적재산권과 Open Access

블로그에 올릴 경우 지적재산권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개인의 블로그에 올리려 하는데 가능한가?

답변: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블로그에서 의편협 홈페이지에 있는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으로 링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의편협 사무실에 사용 신고를 하면 허락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의 여러 학술지 게재

여러 학회가 모여 연구한 다학제 임상지침을 1) 개별 학회지에 모두 게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2) 어떤 게재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가? 3) 발표시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 아니면 2차 게재 형식으로 해야 하는가? 4) 모든 학회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개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가이드라인은 같은 내용이고, 서지 사항도 같아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논문의 종류를 증설이나 원저로 취급하지 않고 〈Editorial〉이나 〈가이드라인 소개〉라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게재하는 목적과 가이드라인의 출처에 대해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본래 만든 학회나 집단의 것이므로, 개별 학술지가 각각 가이드라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출판물은 Open Access 학술지이면 자료가 전부 공개된 것이기에, 그 내용을 다른 자가 표나 그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출판된 학술지의 학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pen Access 저널에서 저작권인계동의서

온라인 학술지로 Open Access (OA) 학술지이다. 현재는 ‘저작권인계동의서’를 공저자에게 받고 있는데 OA 저널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기에 공저자에게 출판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우리나라 학술지는 Open Access (OA) 학술지라도 저작권은 모두 학회가 가지고 있다. OA 학술지의 저작권이 저자에 있다는 것은 편당 3,000불씩 내는 다른 나라 경우이다. 즉 OA 학술지에서 저작권을 개별 저자가 가지는 경우(예, PLOS 계열 학술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학회가 가지고 있다. 학회는 공저자들에게 모두 ‘저작권인계동의서’를 받아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이다.

Open Access 학술지의 인용

Open Access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그림과 표를 해당 잡지 편집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

답변:

개방학술지(Open Access Journal)의 정의에 따라 원전만 밝히면 가져다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Open Access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할 경우에는 표, 그림을 인용하는 학술지가 비영리 목적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 모든 학술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원전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행인이 상업출판사라면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Open Access 적용 시기

학술지가 Open Access (OA) 선언을 하였다면 선언 이전에 발행되었던 논문들도 동일하게 OA 적용을 해야 하는가? OA 선언 이전의 논문 적용은 발행기관이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언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

답변:

Open Access (OA)는 각각 내용(contents)마다 선언되는 것이므로 선언 이전에 발행한 논문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학회에 있기 때문에 학술지/학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학술지/학회에서 OA로 바꾸겠다고 정책을 세우고 학술지가 그 정책을 표방하고 학술지 논문마다 OA 논문이라는 것을 표기하면 그 때부터 OA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OA 선언 시점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PDF 파일을 OA가 적용된 것으로 바꾸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도 있지만,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학술지/학회에서 언제부터 OA를 적용시키겠다고 논문목차 페이지 등에 선언하고 표방하면 OA 논문으로 인정 가능하다.

Open Access 관련 인용 (1)

Open Access (OA) 학술지는 출처만 밝히면 원학술지 출판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답변:

Open Access (OA)에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학술지에 출판을 하면 원학술지 출판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 의학학술지는 모두 비영리이므로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단행본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OA는 출처만 인용하면 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학술지 출판사는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다. 즉 OA라고 하더라도 허가권의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Open Access 관련 인용 (2)

의료기기 회사가 당사의 임상자문의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자사의 제품 광고와 홍보에 인용하고자 논문이 투고된 학술지 편집인에게 문의하였다. 학술지는 Open Access (CCL 3.0)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답변:

Open Access (OA)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할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발행한 학술지/학회가 저작권인계동의서를 받았으므로 학술지/학회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논문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학술지/학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즉, O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면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동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외국학술지의 논문인용

해외출판사에서 발행한 논문에서 그림이나 표를 인용할 경우 각주에 “modified from” 등의 형태로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Copyright Clearance Center에 정식으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또한 원본 그림을 약간 수정하거나 표를 변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한 논문에 표를 5-6개 한꺼번에 인용할 경우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답변:

Open Access의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하는 학술지이면 해당 그림이나 표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 출처 논문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상업학술지에 있는 표나 그림을 인용할 경우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본 그림이나 표를 수정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면 모두 CCC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러 개를 인용할 경우에도 해당 표 전부를 각각 CCC에서 허락받아야 한다.

한글, 영문 학술지의 동시 발행

모 학술지에서 국내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PubMed Central 과 같은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기 위해 한글본과 이를 번역한 영문본을 함께 수록하고자 한다. 이 경우 1) 한 호에 같은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따로 조판하여 함께 출판한 후 PubMed 등에는 영문본(PDF 혹은 인쇄본)만을 발송하는 것도 무방한지 2) 한 호에 같은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따로 조판하여 영문본만 인쇄하고 국문본은 Web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PubMed 등에는 영문본(PDF 혹은 인쇄본)만을 발송하는 것도 무방한지?

답변:

학술지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인쇄본과 온라인본이 동일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에 대한 논문은 언어와 무관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발행하는 것은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이를 동시에 출판할 경우 이차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발행하면, 1) 원저 학술지의 학술성이 위축되거나 소멸하고, 2) 논문 서지 사항의 혼동을 초래하며, 3) 논문에 부여하는 DOI 관련 자료에 혼선과 오류가 발생하고, 4) 향후 논문 인용 시 혼동이 초래된다. 따라서 한글본과 영문본의 2개를 동시 혹은 시간의 차이를 둔 이차출판으로 발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각각 발간하는 것은 이차출판과는 다르다. 이차출판은 책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논문만 골라서 소수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책 전체를 이차 출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원저로서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

저작권인계동의서

모 학술지는 투고규정 중에 저작권관련 내용이 있지만 저자 사인을 포함하는 저작권이전 계약서를 받는다. 이 경우에 논문의 저자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출판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예: 기관이 학회이면 학회)가 가진다. 저자(들)은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출판 전에 저작권인계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에 저자들 모두의 서명과 사인을 해서 제출한다. 이러한 저작권인계동의서는 대부분 학술지가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저작권인계동의서와 저자동의서는 다른 것으로 저자동의서는 논문제출 시 저자(들)이 그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에 동의하여 하는 절차이다. 이는 논문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따라서 저자동의서와 저작권인계동의서는 구분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1. 상업적 목적의 별책 사용에서 의편협이 정한 기준은 없으며, 발행처가 상업회사인 경우는 그 회사의 기준에 의하고, 비상법적 학회지인 경우도 학회의 policy의해 운영되며 기준은 없다.

JKMS의 예를 보면 1~1,000부 인쇄: 1부당 1\$, 1,001~3,000부 인쇄: 1부당 0.75\$, 3,000부 이상 인쇄: 0.5\$이다. 참고하여 학회에서 정하면 된다.

2. 의편협이 제공하는 표준형 저작권인계동의서의 양식은 없다. 의편협 홈페이지에 가면 중요 학술지의 투고규정이 모여져 있다. 이 투고규정 속의 저작권인계동의서 들을 참고하여 만들면 된다. 대부분 중요 학술지의 양식은 유사하며, 이것을 모방하여 작성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국문번안한 설문지의 사용

영문 설문지를 번안한 한글판 설문지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설문지 내용을 부록에 제출하였다면 1) 설문지를 재번역(retranslation) 해야 하는지, 2) 영문판으로 작성한 뒤 개정해서 사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써야 할지, 3) 부록에 삽입하지 말고 원고 안에 풀어서 작성한 뒤 참고문헌 표시를 해야 하는가?

답변:

설문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설문지를 논문의 말미에 부록으로 제공하여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다. 투고하는 학술지의 투고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부록으로 첨부하는 것이 다른 연구자나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논문 부록에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를 추가할 때, 추가되는 설문지의 언어는 설문이 진행된 언어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 문항이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루어져 공인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번역된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글판으로 번안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영어로 단순 번역하여 부록에 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설문지를 번역할 때 허락을 받고 한글로 번역하였는지(또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저자가 확인해야 하고 편집인이 검토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번안한 설문지의 경우 부록에 삽입되는 설문지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 결정한다. 설문지의 경우 논문의 보조적인 자료로서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 작성에 사용된 자료를 어떤 이유로든 변형시켜서 첨부한다고 하는 것은 논문의 재료 혹은 자료를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자료 사용 동의

systematic review나 meta analysis를 할 때 연구에 자료가 포함된 인용연구에 대하여 저자들에게 자료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reference에 명기로 충분한가요?

답변:

이미 출판된 자료는 공개된 내용이다. 저작권을 가진 곳의 허가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단, 대상과 방법에서 출처를 기재하고 이에 따른 참고문헌에서 목록에 기재하면 될 것이다.

투고규정 인용

A 학술지가 현재의 Aims & Scope 및 Author guide, checklist 등을 점검하여 수정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윤리규정 관련하여 다른 학술지의 윤리규정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윤리규정에 다른 학술지에서 인용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용허가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영문 투고규정을 작성할 때 여러 곳의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투고규정은 많은 부분이 공통된 내용을 가지므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경우 한 개의 잡지 것을 그대로 통째로 동일하게 사용하면 곤란하며, 자신의 학술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특히 aims and scope나 다른 부분에서 학술지의 특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차별되어야 한다. 윤리규정을 타 잡지의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인용처를 밝히는 것도 모두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기존의 것을 변경, 수정하고, 인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